

의안번호	제 2019 - 21호
보 고 연 월 일	2019. 10. 25. (제9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전문위원 전체회의	1
1. 제127차 전체회의	1
2. 제128차 전체회의	1
II.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2
1. 개관	2
2. 통계자료	3
3. 양형기준 적용범위(설정 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4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6
5. 형량범위 검토 결과	9
6.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9
I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범죄군 명칭/형량범위)	16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16
2. 유형 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17
3. 범죄군 명칭에 대한 검토 결과	20
4.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검토 결과	23
5. 소결론 - 형량범위(안)	23
IV.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형량범위)	31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31
2. 유형 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31
3. 중유형의 명칭 검토 결과	33
4.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마. '균형법상 성범죄' 형량범위 검토	35
5. 대유형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중유형 다. '균형법상 성범죄'	

형량범위 검토	35
6. 소결론 - 형량범위(안)	35
V.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형량범위)	37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31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31
3. 양형자료조사 결과	31
4. 대유형의 명칭과 순서	31
5. 소유형 1 '위험운전치상'의 형량범위 검토	31
6. 소유형 2 '위험운전치사'의 형량범위 검토	31
7. 소결론 - 형량범위(안)	31
VI. 향후 일정	38
1. 전문위원 전체 회의	31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31



I. 전문위원 전체회의¹⁾

1. 제127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9. 9. 30.(월) 15:30 ~ 19: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장일희, 최승원, 최준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범현, 한상규, 정초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디지털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수정 방안(형량범위) 검토

2. 제128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9. 10. 7.(월) 15:30 ~ 18:5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나.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범현, 장일희,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강수진, 정초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1) 전문위원 전체회의가 2회 개최되어 양형기준 해설 수정을 위한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는 연기됨

II.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1. 개관

가.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된 이후 4차례(2014. 2. 13., 2014. 5. 14., 2015. 12. 24. 및 2017. 2. 8.)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① 법정형이 높아지거나 하한이 정해지고, ② 구성요건이 세분화되거나 내용이 보충, 수정됨
- 개정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음
- 특히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
 - 이에 따라 전문위원단은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전반기 최우선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제128차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수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나. 양형기준 시행 후 공직선거법 개정 현황

공직선거법 제230조 (단, 제5항 제외)	개정 (2014. 2. 13., 2014. 5. 14.)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1~5. (생략)	1~5. (개정 전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6항제2호	<u>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u>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각호 생략)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한다. (각호 생략)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1조	개정 (2014. 2. 13.)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단, 제3항은 제외)	개정 (2014. 2. 13.)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개정 (2015. 12. 2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

<p>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u>인격</u>·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u>가족관계</u>·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u>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u>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중 96조 위반 부분</p>	<p>개정 (2015. 12. 24.)</p>
<p>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u>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u>제96조제2항</u>을 위반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제96조제1항</u>을 위반한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공직선거법 제254조</p>	<p>개정 (2017. 2. 8.)</p>
<p>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u>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u>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공직선거법 제255조 (단, 제4항은 제외)</p>	<p>신설 및 개정 (2014. 2. 13., 2017. 2. 8.)</p>
<p>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p>	<p>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p> <p>⑤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 벌금형 변경 현황

순번	구분	감경 영역	법령	개정
1	대유형1 중 소유형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300만 원	공직선거법 230조 7항	600 ↓ → 1,000 ↓
			공직선거법 230조 8항	1,000 ↓ → 3,000 ↓
2	대유형1 중 소유형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공직선거법 230조 1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4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6항	1,000 ↓ → 500~3,000
3	대유형1 중 소유형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700만 원	공직선거법 230조 2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5조 2항	7 ↓ or 2,000 ↓ (변경X)
4	대유형1 중 소유형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1,500만 원	공직선거법 231조 2항	300~2,000 → 300~5,000
			공직선거법 231조 1항	500~3,000 → 500~7,000
			공직선거법 232조 1항	500~3,000 → 500~5,000
			공직선거법 232조 2항	500~3,000 → 500~7,000
5	대유형3 중 소유형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공직선거법 252조 1항, 96조	3 ↓ or 600 ↓ → 252조2항,96조1항 5 ↓ or 300~2,000 / 252조1항,96조2항 7 ↓ or 500~3,000

2. 통계자료2)

가. 통계의 범위

○ 2014. 5. 14.³⁾ 이후 기소된 사건 중 2018. 12. 31.까지 선고된 1,334건

나. 선고내역

단위: 명, %

구분	유형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수	-	3	3	-	6
		비율	-	50.0	50.0	-	100.0
	제2유형	수	15	97	198	1	311
		비율	4.8	31.2	63.7	0.3	100.0
	제3유형	수	3	11	11	-	25
		비율	12.0	44.0	44.0	-	100.0
	제4유형	수	-	3	-	-	3
		비율	-	100.0	-	-	100.0
	전체	수	18	114	212	1	345
		비율	5.2	33.0	61.4	0.3	100.0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수	4	23	225	-	252
		비율	1.6	9.1	89.3	-	100.0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	수	-	2	28	-	30
		비율	-	6.7	93.3	-	100.0
	제2유형	수	-	-	102	-	102
		비율	-	-	100.0	-	100.0
	제3유형	수	8	24	63	1	96
		비율	8.3	25.0	65.6	1.0	100.0
	전체	수	8	26	193	1	228
		비율	3.5	11.4	84.6	0.4	100.0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 운동	제1유형	수	-	4	105	-	109
		비율	-	3.7	96.3	-	100.0
	제2유형	수	-	15	383	-	398
		비율	-	3.8	96.2	-	100.0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공. 이하 통계자료는 모두 동일함

3) 법정형의 변경은 2014. 2. 13.과 2014. 5. 14. 개정 시 주로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2014. 5. 14.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4. 5. 14. 이후 기소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선고 내역을 확인함(다만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 사건도 일부 포함됨)

단위: 명, %

구분	유형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제3유형	수	1	1	-	-	2
		비율	50.0	50.0	-	-	100.0
	전체	수	1	20	488	-	509
		비율	0.2	3.9	95.9	-	100.0

3. 양형기준 적용범위(설정 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문구 삭제 ⇨ 의견 일치

-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둠 ⇨ 2018 양형기준 책자 313쪽 참조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각각 공직선거법의 벌칙 규정 등을 준용하는 규정. 그런데 2016. 12.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에 관한 규정들과 위 제57조 제1항의 공직선거법 준용 규정이 모두 삭제됨. 즉 현재는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만 공직선거법이 준용됨
-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해당 부분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한다.”로 수정

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1, 2, 3, 5호 위반죄(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규정 위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 추가 여부

(가) 다수 의견(7인) :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할 당시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행정법규 위반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대상 범죄의 유형이 대단히 광범위하여 유형분류, 양형인자 추출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현 시점에서 양형기준 설정 당시와는 달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위반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음
- 매우 다양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위반 범죄들 중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규정 위반죄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국한하여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 현재 양형자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적용대상에 추가할 경우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수정이 어렵게 됨. 추후 공직선거법 제256조 위반 범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소수 의견(4인) : 추가하자는 견해

- 공직선거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제256조 제1항(제4호 제외)⁴⁾에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신설 취지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 현재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당내경선은 필수적인 절차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국민적 관심도 또한 높음
- 1심 선고건수(이종경합범 포함)가 2016년 14명, 2017년 6명, 2018년 20명, 2019년(1~8.) 9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4)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위반죄(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추가 여부

(가) 다수 의견(9인) :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비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지만, 구성요건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만 되어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처벌조항에 관하여 2016. 7. 27.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 2017. 2. 8. 법정형이 대폭 낮아졌는데(1년~10년 징역 또는 1,000만 원~5,000만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아직 선고 사례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음
- 현재 양형자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적용대상에 추가할 경우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수정이 어렵게 됨

(나) 소수 의견(2인) : 추가하자는 견해

-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 시 신설된 제85조 제1항(제255조 제5항)은 공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선거범죄 유형에 해당함.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제255조 제3항)'의 경우 2016년~2019년 8월 1심 선고건수(이중 경합범 포함)가 27건이고,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제255조 제5항)'의 경우 위 기간 동안 1심 선고건수(이중 경합범 포함)가 14건으로 빈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

라.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위반죄(선거비용 부정지출)⁵⁾ 추가 여부

(가) 다수 의견(8인) :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2012년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사건 수가 극히 드물다는 이유로(2006. 1. 1. ~ 2011. 12. 31. 선고된 사건 수가 7건) 설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 시점에서 설정 필요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음
- 특히 2019. 6. 10. 열린 제9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⁶⁾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이 규정은 과거 공직선거법에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2005. 8. 4. 정치자

5)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6)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금법 전부개정 당시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됨]. 그럼에도 법정 상한초과지출 부분만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 의결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나) 소수 의견(3인) : 추가하자는 견해

- 2012. 9. 1.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할 당시 발생빈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설정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 추세이고,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 선거범죄임
- 제19대 총선('12. 4.) 29명, 제20대 총선('16. 4.) 12명, 제6회 지방선거('14. 6.) 36명, 제7회 지방선거('18. 6.) 52명이 입건되어 특히 지방선거에서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음

4.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대유형3(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에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위반죄(허위 논평 등), 제2항 위반죄(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의 소유형 분류 변경 ⇨ 의견 일치

- 대유형 3 중 소유형1(후보자비방)에 속하는 범죄의 법정형 변경 상황은 아래와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정 전 법정형	개정 후 법정형	비고
제1유형 (후보자비방)	후보자비방	§ 251	3년 ↓, 500만 ↓		§ 96①,② 세분화, 상한 ↑, 벌금형 하한 추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 252①, ② (구 § 252 ①,96)	3년 ↓, 600만 ↓	§ 252②,96① : 5년 ↓, 300~2000만 § 252①,96② : 7년 ↓, 500~3000만	

- 즉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252조 제2항)와 방송·

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252조 제1항)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더 이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와 같은 소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됨

- 한편, 대유형3 중 소유형2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는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252조 제2항)와 법정형이 거의 동일함. 소유형3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는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252조 제1항)와 법정형이 일치함
- 따라서 현행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1에서 ①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252조 제2항)는 소유형2(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②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252조 제1항)는 소유형3(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각각 포섭시키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

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1, 2, 3, 5호 위반죄(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규정 위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관련 각종 제한규정 위반)의 유형분류 방안 ☞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결될 경우를 가정한 논의임

(가) 제1 의견(6인) : 대유형4(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 운동)의 소유형2(선거운동방법 위반)에 포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의 법정형(징역 3년↓ 또는 벌금 600만 원↓)이 소유형2(선거운동방법 위반)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의 법정형과 동일함

(나) 제2 의견(5인) :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위반행위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2항 위반행위는 행위태양이 다르고, 양형인자의 공통성이 없어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 어려움

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위반죄(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의 유형 분류 방안 ☞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결될 경우를 가정한 논의임

- 대유형4(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새로운 소유형으로 추가하는 데 의견 일치됨
 - 대유형 내에는 제3유형으로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이 있으나, 벌금형이 없어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를 이에 포섭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소유형으로 추가함이 타당
 - 다만, 금지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5조의 체계상 선거관여 금지가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일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순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소유형3으로,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을 소유형4로 정함이 타당함

라.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위반죄(선거비용 부정지출)의 유형 분류 방안 ☞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결될 경우를 가정한 논의임

(가) 다수 의견(7인) : 대유형4(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소유형5로 신설

- 행위태양상 대유형 『0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에 포함시키되, 다른 소유형들과 법정형 등을 달리하므로 제5유형으로 신설함이 타당함

(나) 소수 의견(4인) :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

- 선거비용 부정지출은 선거운동기간 위반이나 선거운동방법 위반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인자의 공통성이 없어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 어려움

5. 형량범위 검토 결과

가. 대유형 1 ‘매수 및 이해유도’ 형량범위 검토

(1) 기본 방향

- 아래 표와 같이 소유형1~4에 포함된 일부 범죄의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거나 하한이 설정되었으므로 벌금형 권고형량범위를 상향

구분	법령	개정
대유형1 중 소유형1 (당내경선 관련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7항	600 ↓ → 1,000 ↓
	공직선거법 230조 8항	1,000 ↓ → 3,000 ↓
대유형1 중 소유형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1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4항	1,000 ↓ → 3,000 ↓
	공직선거법 230조 6항	1,000 ↓ → 500~3,000
	공직선거법 235조 1항	5 ↓ or 1,000 ↓ (변경X)
대유형1 중 소유형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공직선거법 230조 2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0조 3항	1,500 ↓ → 5,000 ↓
	공직선거법 235조 2항	7 ↓ or 2,000 ↓ (변경X)
대유형1 중 소유형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공직선거법 231조 2항	300~2,000 → 300~5,000
	공직선거법 231조 1항	500~3,000 → 500~7,000
	공직선거법 232조 1항	500~3,000 → 500~5,000
	공직선거법 232조 2항	500~3,000 → 500~7,000

- 2012년 양형기준 최초 설정 당시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하여서는 엄정한 처벌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권고함(반면 다른 유형의 경우 기본영역 또는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권고함) ⇨ 수정된 양형기준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함

(2) 의견이 일치된 부분

- 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상향된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경 영역만 수정
- ② 소유형1(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감경 영역 상한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개정 전 법정형 상한이 600만 원일 때 권고형량범위 상한이 그 1/2인 300만 원이었으므로 현행 법정형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정함이 적절
- ③ 소유형2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
 - 종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 원~3,000만 원으로 하한이 신설된 사정을 반영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소유형 2~4 벌금형 상한)

(가) 제1 의견(6인) : 원칙적으로 법정형 상한의 1/2로 정하는 견해

-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징역형에 비례한 벌금형의 적정화에 있으므로 벌금형 상한의 정도를 반영하여 양형기준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
- 소유형1의 형량범위 설정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함

① 소유형2

- 소유형2 중 기본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항의 벌금형 상한이 3,000만 원이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1,500만 원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조정(500만 원 ⇨ 1,500만 원)
- 다만, 소유형 2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상한은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형량범위 상한(1,500만 원)보다 법정형이 낮음.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의 1/2이 상한이 되도록 권고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1/3로 감경하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함

② 소유형3

- 소유형3에는 벌금형 상한이 2,000만 원인 범죄와 5,000만 원인 범죄가 있는데 하한이 없다는 점에서 소유형4와는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소유형4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면 그보다 낮은 2,000만 원이 적정함(700만 원 ⇨ 2,000만 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3항 위반죄가 '벌금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략 3배 정도 상향되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상향하는 의미도 있음
- 다만, 소유형3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2,000만원인데, 같은 소유형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3항의 법정형의 벌금 상한 5,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위반죄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의 1/2이 상한이 되도록 권고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1/2로 감경하는 서술식 기준을 둬

③ 소유형4

- 소유형4 중 기본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제232조 제1항의 벌금형 상한이 5,000만 원이므로 그 1/2에 해당하는 2,500만 원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조정(1,500만 원 ⇨ 2,500만 원)

④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300만 원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700만 원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1,500만 원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 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 ▷ 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감경
- ▷ 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나) 제2 의견(5인) :

- 법정형 상향에 따른 양형기준의 기계적·산술적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유형1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상향되는 것은 균형상 적절하지 않음[소유형1에도 벌금형 3,000만 원 이하의 범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가 포함되어 있음]
- 법정형 상향이 3,000만 원으로 동일한 후보자에 대한 매수(개정 전 법률)의 벌금형 권고형량범위 상한은 1,500만 원, 허위사실공표(현행 법률)에 대한 벌금형 권고형량범위 상한은 1,000만 원임.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등 행위의 법정형 상한이 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1,500만 원으로 함은 부적절하고 1,000만 원으로 설정함이

타당

- 소유형 1의 하한이 500만원이고 유형 상승에 따라 500만원씩 상향되는 것이 적절
- 다만 소유형 3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2,000만 원인데, 같은 소유형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3항의 법정형의 벌금 상한 5,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권고되는 벌금형의 상한을 1/2로 감경하는 서술식 기준을 둬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3배 가중

▷ 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로 감경

나. 대유형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형량범위 검토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 변동 없음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다. 대유형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형량범위 검토 ⇨ 서술식 기준 추가(의견 일치)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위반죄(허위 논평 등), 제2항 위반죄(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의 소유형 분류 조정 반영
- 소유형2(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 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은 70만 원인데,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00만 원이므로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2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필요
-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70만 원 - 300만 원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원	1년 - 3년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함**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함하되, 감경 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라. 대유형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형량범위 검토

- 적용 대상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형량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의견 일치 ⇨ 법정형 변동 없음
- 적용 대상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거쳐 추후 해당 범죄의 형량범위를 논의하기로 함

6.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 적용 대상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집행유예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 일치
- 적용 대상이 추가될 경우 양형자료조사를 거쳐 추가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추후 논의하기로 함

II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범죄군 명칭/형량범위)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가. 설정 범위

- 설정 범위 포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설정 범위 제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죄,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죄

나. 유형 분류

■ 유형 분류				
42. 디지털 성범죄(명칭은 미정)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2.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 유형 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①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유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범죄군 명칭에 대한 검토 결과

(1) 「디지털 성범죄」 라는 명칭의 적정성

(가) 다수 의견(10인) : 범죄군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

- 기존의 성범죄와 달리 범죄의 행위태양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유포, 음란행위에 불과하여 성범죄의 전체 유형을 포섭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수단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범죄까지 포섭할 수 있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양형위원회에서 2가지 범죄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칫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립에 혼동을 줄 수 있음

(나) 소수 의견(1인) : 범죄군 명칭으로 적절하다는 견해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한 개념처럼 사용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해당 범죄 대부분이 디지털을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
- 기존 양형기준에 '성범죄'라는 범죄군이 존재하므로 '디지털'이라는 특성만을 추가하는 범죄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다수 의견이 제안한 범죄군 명칭

(가) 「카메라·통신매체 등 이용 성범죄」(8인)

- 기존의 범죄군 명칭은 대표적 행위태양 또는 범죄 명칭으로 전체 범죄군을 아우르고 있음(체포·감금, 위증·증거인멸, 약취·유인 범죄 등/ 변호사법위반 범죄, 석유사업법위반 범죄 등)
- 카메라와 통신매체라는 대표적 행위 매개 수단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상위 포섭 범죄(성범죄)를 언급하는 형태로 범죄군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카메라 등 매체 이용 성범죄」(2인)

- 카메라와 통신매체만을 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카메라 등 매체 이용 성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범죄도 포섭할 수 있음

4.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검토 결과

가. 고려 사항

- 일반적 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해당 범죄군의 특수한 사항
 - 법정형이 다소 낮고(징역형의 경우 가장 높은 경우가 7년), 각 유형별로 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음
 - 과거 구약식이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
 - 특히 유폐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 대유형 1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량범위 검토

(1) 양형자료조사결과

(가) 형량 분포

① 전체

단위: 명, % 월

범행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①촬영	수	3	2	268	18	609	1	226	2	128	89	2	1	0	6	0	2	1	0	1	0	1,359	6.83
	비율	0.2	0.1	19.7	1.3	44.8	0.1	16.7	0.1	9.5	6.6	0.1	0.1	0.0	0.4	0.0	0.1	0.1	0.0	0.1	0.0	100.0	
②유포	수	0	0	1	0	6	0	4	0	1	3	0	0	0	3	0	1	0	0	0	0	19	10.3 2
	비율	0.0	0.0	5.3	0.0	31.6	0.0	21.1	0.0	5.3	15.8	0.0	0.0	0.0	15.8	0.0	5.3	0.0	0.0	0.0	0.0	100.0	
③본인이 촬영 및 유포	수	0	0	19	1	68	0	38	0	28	27	0	0	1	5	1	2	1	1	0	1	193	8.77
	비율	0.0	0.0	9.8	0.5	35.2	0.0	19.7	0.0	14.5	14.0	0.0	0.0	0.5	2.6	0.5	1.0	0.5	0.5	0.0	0.5	100.0	
④: ②+③	수	0	0	20	1	74	0	42	0	29	30	0	0	1	8	1	3	1	1	0	1	212	8.91
	비율	0	0	9.4	0.5	34.9	0	19.8	0	13.6	14.1	0	0	0.5	3.8	0.5	1.4	0.5	0.5	0	0.5	100	
⑤촬영 및 유포의 경합범	수	0	0	0	0	3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5	8.80
	비율	0.0	0.0	0.0	0.0	60.0	0.0	0.0	0.0	0.0	2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⑥촬영 및 영리목적 유포	수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8.00
	비율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3	2	288	19	686	1	269	2	157	120	3	1	1	14	1	5	2	1	1	1	1,577	7.12
	비율	0.2	0.1	18.3	1.2	43.5	0.1	17.1	0.1	10.0	7.6	0.2	0.1	0.1	0.9	0.1	0.3	0.1	0.1	0.1	0.1	100.0	

② 실형

단위: 명, % 월

범행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8	9	10	12	14	18		
촬영	수	2	243	11	539	187	1	106	69	1	2	1,161	6.64
	비율	0.2	20.9	0.9	46.4	16.1	0.1	9.1	5.9	0.1	0.2	100.0	
유포	수	0	1	0	4	3	0	1	2	0	2	13	9.38
	비율	0.0	7.7	0.0	30.8	23.1	0.0	7.7	15.4	0.0	15.4	100.0	
본인이 촬영 및 유포	수	0	15	0	61	29	0	19	23	0	4	151	7.92
	비율	0.0	9.9	0.0	40.4	19.2	0.0	12.6	15.2	0.0	2.6	100.0	
촬영 및 유포의 경합범	수	0	0	0	3	0	0	0	0	0	0	3	6.00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촬영 및 영리목적 유포	수	0	0	0	0	1	0	0	0	0	0	1	8.00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2	259	11	607	220	1	126	94	1	8	1,329	6.81
	비율	0.2	19.5	0.8	45.7	16.6	0.1	9.5	7.1	0.1	0.6	100.0	

③ 집행유예

단위: 명, %, 월

범행유형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촬영	수	1	2	25	7	70	1	39	1	22	20	1	1	0	4	0	2	1	0	1	0	198	7.94
	비율	0.5	1.0	12.6	3.5	35.4	0.5	19.7	0.5	11.1	10.1	0.5	0.5	0.0	2.0	0.0	1.0	0.5	0.0	0.5	0.0	100.0	
유포	수	0	0	0	0	2	0	1	0	0	1	0	0	0	1	0	1	0	0	0	0	6	12.33
	비율	0.0	0.0	0.0	0.0	33.3	0.0	16.7	0.0	0.0	16.7	0.0	0.0	0.0	16.7	0.0	16.7	0.0	0.0	0.0	0.0	100.0	
본인이 촬영 및 유포	수	0	0	4	1	7	0	9	0	9	4	0	0	1	1	1	2	1	1	0	1	42	11.83
	비율	0.0	0.0	9.5	2.4	16.7	0.0	21.4	0.0	21.4	9.5	0.0	0.0	2.4	2.4	2.4	4.8	2.4	2.4	0.0	2.4	100.0	
촬영 및 유포의 경합범	수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2	13.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1	2	29	8	79	1	49	1	31	26	2	1	1	6	1	5	2	1	1	1	248	8.75
	비율	0.4	0.8	11.7	3.2	31.9	0.4	19.8	0.4	12.5	10.5	0.8	0.4	0.4	2.4	0.4	2.0	0.8	0.4	0.4	0.4	100.0	

(나) 형량 분포 분석

- 촬영 범죄의 평균형량은 징역 6.83월. 징역 6월(44.8%)이 가장 많고, 징역 4월(19.7%), 징역 8월(16.7%), 징역 10월(9.5%), 징역 1년(6.6%)의 순서임
 -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의 합계가 전체의 98.8%에 이룸(징역 4월 미만의 합계는 전체의 0.3%, 징역 1년 초과 합계는 0.9%)
 - 대상판결 중 최고 형량은 징역 3년 6월(1건)이고, 그 밖에 징역 2년 6월(1건), 징역 2년(2건)이 있었음
- 유포 범죄(촬영자 본인이 유포한 경우 포함)의 평균형량은 징역 8.91월. 징역 6월(34.9%)이 가장 많고, 징역 8월(19.8%), 징역 1년(14.1%), 징역 10월(13.6%), 징역 4월(9.4%)의 순서임
 -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의 합계가 92.3%에 이룸(징역 6월 미만의 합계는 9.8%, 징역 1년 6개월 초과 합계는 3.4%)
 - 대상판결 중 최고 형량은 징역 4년 6월(1건), 그 밖에 징역 3년(1건), 징역 2년 6월(1건)이 있었음

(2)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

(가) 소유형1 ‘촬영’

1)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 : 징역 1년 6월
- 가중 영역의 상한 : 징역 2년 6월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의 하한
 - ㉞ 다수 의견(6인) : 징역 4월
 - ㉟ 소수 의견(4인) : 징역 6월
- 감정 영역
 - ㉞ 다수 의견(8인) : 징역 8월 이하
 - ㉟ 소수 의견(2인) : 징역 4월~10월
- 가중 영역의 하한
 - ㉞ 다수 의견(8인) : 징역 10월
 - ㉟ 소수 의견(2인) : 징역 8월

2)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의 상한

- 선고형량의 분포, 유사 법정형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① 기본 영역의 하한
 - ㉞ 다수 의견(6인) : 징역 4월

-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 4월(집행유예 포함, 이하 동일)이 선고된 경우가 19.7%에 이룸. 범죄의 특성상 감경 인자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본영역의 하한을 6월로 정하게 되면 20%에 가까운 이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형량범위를 다소 넓힐 필요 있음

㉞ 소수 의견(4인) : 징역 6월

-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 6월이 44.8%로 가장 많은 선고가 이루어지는 형량에 해당하고, 상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하한은 징역 6월 정도가 적절함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의 추세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② 감경 영역

㉟ 다수 의견(8인) : 징역 8월 이하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징역 5년↓)에 대한 종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10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2.2% 상당이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㊱ 소수 의견(2인) : 징역 4월~10월

-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하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할 경우 감경 영역 상한을 징역 10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③ 가중 영역의 하한

㊲ 다수 의견(8인) : 징역 10월

-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하면 현행 양형실무의 약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소 많아짐

- 규범적 관점에서 가중 영역의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양형을 권고

㉔ **소수 의견(2인) : 징역 8월**

- 특별가중인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한을 징역 10월로 설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높은 이탈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다수 의견에 따른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8월 ⁷⁾	4월 ⁸⁾ -1년6월	10월 ⁹⁾ -2년6월

(나) 소유형2 ‘반포 등’

1)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 : 징역 2년
- 감경 영역 : 징역 4월~10월
- 가중 영역의 상한 : 징역 3년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의 하한
 - ㉔ 다수 의견(6인) : 징역 6월
 - ㉔ 소수 의견(4인) : 징역 8월
- 가중 영역의 하한
 - ㉔ 다수 의견(7인) : 징역 1년
 - ㉔ 소수 의견(3인) : 징역 1년 6월

7) 4-10월(2인)있음

8) 6월(4인) 있음

9) 8월(2인) 있음

2)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 가중 영역의 상한 및 감경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소유형1과의 차등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을 징역 2년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감경 영역을 징역 4월~10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① 기본 영역의 하한

㉠ 다수 의견(7인) : 징역 6월

-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34.9%로 가장 많음. 기본 영역의 하한을 8월로 설정 할 경우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이탈률이 발생하여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소수 의견(3인) : 징역 8월

- 유포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하한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촬영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6월로 정할 경우 그보다 죄책이 무거운 배포죄에 대한 하한을 징역 8월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가중 영역의 하한

㉠ 다수 의견(7인) : 징역 1년

- 촬영범죄와 유포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유포범죄의 하한을 촬영범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소수 의견(3인) : 징역 1년 6월

-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악성 유포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하한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다수 의견에 따른 형량범위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반포 등	4월-10월	6월 ¹⁰⁾ -2년	1년 ¹¹⁾ -3년

다. 대유형 2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량범위 검토

(1) 양형자료조사결과

(가) 형량 분포

① 전체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5	2	49	7	97	16	11	7	1	196	5.97
	비율	0.5	2.6	1.0	25.0	3.6	49.5	8.2	5.6	3.6	0.5	100.0	

② 실형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8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1	3	1	7	2	16	3	5	4	1	43	6.60
	비율	2.3	7.0	2.3	16.3	4.7	37.2	7.0	11.6	9.3	2.3	100.0	

③ 집행유예

단위: 명, %, 월

분류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2	1	42	5	81	13	6	3	153	5.79
	비율	1.3	0.7	27.5	3.3	52.9	8.5	3.9	2.0	100.0	

(나) 형량 분포 분석

10) 8월(3인) 있음

11) 1년6월(3인) 있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평균형량은 징역 5.97월. 징역 6월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징역 4월이 25%임
- 징역 4월 내지 징역 6월의 합계가 전체의 74.5%
- 조사대상판결 중 최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1건)

(2)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

(가)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가중 영역의 상한 : 징역 1년 6월
- 감경 영역의 하한 : 따로 두지 않음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 다수 의견(8인) : 징역 4월~10월
 - ㉡ 소수 의견(2인) : 징역 6월~1년
- 감경 영역의 상한
 - ㉠ 다수 의견(8인) : 징역 6월
 - ㉡ 소수 의견(2인) : 징역 8월
- 가중 영역의 하한
 - ㉠ 다수 의견(9인) : 징역 8월
 - ㉡ 소수 의견(1인) : 징역 6월

(나) 상세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가중 영역의 상한, 감경 영역의 하한
 - 선고형량의 분포, 소유형1과의 차등 등을 감안할 때, 가중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감경 영역의 하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① 기본 영역

㉠ 다수 의견(8인) : 징역 4월~10월

- 양형자료조사 결과 6월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32.7%이므로, 기본 영역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설정하게 되면 높은 이탈률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수 의견(2인) : 징역 6월~1년

-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 49.5%로 가장 많고, 형량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감경 영역의 상한

㉠ 다수 의견(8인) : 징역 6월

- 법정형 등 감안하여 대유형1의 감경 영역 상한보다 낮게 설정함이 바람직함
- 만약 상한을 '8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0.4%가 감경 영역에 포섭되는 문제 발생

㉡ 소수 의견(2인) : 징역 8월

- 참고가 되는 폭행, 학대, 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상한이 '8월'임
- 보다 더 엄정한 양형을 권고할 필요 있음

③ 가중 영역의 하한

㉠ 다수 의견(9인) : 징역 8월

-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면서도 법정형 등 감안하여 대유형1의 가중 영역 하한보다 낮게 설정함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1인) : 징역 6월

-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한을 징역 8월로 설정할 경우 높은 이탈률이 발생할 우려 있음

(다) 다수 의견에 따른 형량범위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¹²⁾	4월-10월 ¹³⁾	8월 ¹⁴⁾ -1년6월

5. 소결론 - 형량범위(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8월 ¹⁵⁾	4월 ¹⁶⁾ -1년6월	10월 ¹⁷⁾ -2년6월
2	반포 등	4월-10월	6월 ¹⁸⁾ -2년	1년 ¹⁹⁾ -3년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²⁰⁾	4월-10월 ²¹⁾	8월 ²²⁾ -1년6월

12) 8월(2인) 있음

13) 6월-1년(2인) 있음

14) 6월(1인) 있음

15) 4-10월(2인) 있음

16) 6월(4인) 있음

17) 8월(2인) 있음

18) 8월(3인) 있음

19) 1년6월(3인) 있음

20) 8월(2인) 있음

21) 6월-1년(2인) 있음

22) 6월(1인) 있음

IV.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형량범위)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가. 설정 범위

-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포함된 군인등강간(제92조), 군인 등유사강간(제92조의2),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 군인등강간등상해/치상(제92조의7), 군인등강간 등치사(제92조의8) ⇨ 포함
- 전지강간(제84조), 추행(제92조의6) ⇨ 제외
- 군인등강간등살인(제92조의8) ⇨ 추후에 살인범죄 수정

나. 유형 분류

3. 성범죄 양형기준				
01 ¹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	군인등유사강간			
3	군인등강간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	군인등유사강간			
3	군인등강간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변동 없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2. 유형 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가. 군형법상 성범죄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92	군인등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 ²³⁾ 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	5년 ↑ 유기징역
§ 92의2	군인등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3년 ↑ 유기징역
§ 92의3	군인등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	1년 ↑ 유기징역
§ 92의4	군인등(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92, § 92의2, § 92의3의 예에 따름
§ 92의7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7년 ↑ 징역
§ 92의8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 징역

23) 제1조(적용대상자)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3. 중유형의 명칭 검토 결과

가. 다수 의견(7인) : 「군형법상 성범죄」로 하자는 견해

- 군형법상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등인 경우에 성립함. '군인등 대상 성범죄'라고 하면 객체가 군인등인 모든 경우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군형법상 성범죄라는 명칭이 보다 더 정확함

나. 소수 의견(3인) : 「군인등 대상 성범죄」, 「군인등 대상 상해/치상」으로 하자는 견해

- 성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1과 대유형2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중유형을 분류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과 같은 명칭을 사용함. 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군인등 대상 성범죄', '군인등 대상 상해/치상'이 더 적절함

4.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중 중유형 마. '군형법상 성범죄' 형량범위 검토

가. 양형자료조사결과²⁴⁾

(1)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

(가) 전체 - 224건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48	60		
군인등 (준)강제추행	수	79	25	1	5	80	19	8	3	4	-	-	224	10.99
	비율	35.3	11.2	0.4	2.2	35.7	8.5	3.6	1.3	1.8	-	-	100.0	

24)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실시한 양형자료조사(2019. 7. 8. ~ 2019. 7. 26.)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서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제1심 사건에 대한 것임(전역자 등에 대한 일반 법원 선고 사건은 불포함). 이하 같음

(나) 실행 - 26건(전체 건수 대비 11.6%)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2	18	24	36	48	60		
군인등 (준)강제추행	수	11	1	10	3	1	-	-	-	26	10.46
	비율	42.3	3.8	38.5	11.5	3.8	-	-	-	100.0	

(다) 집행유예 - 198건(전체 건수 대비 88.4%)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군인등 (준)강제추행	수	68	24	1	5	70	16	7	3	4	198	11.06
	비율	34.3	12.1	0.5	2.5	35.4	8.1	3.5	1.5	2.0	100.0	

(라) 형량분포 분석

- 전체 평균형량은 10.99월로서, 징역 1년이 35.7%로 가장 많고, 징역 6월이 35.3%[전체 선고형량의 71%가 6월(작량감경 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하한)과 1년(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 있음]
- 징역 6월 내지 1년의 합계가 전체 선고 건수의 84.8%에 이룸
- 선고된 최고 형량은 실행의 경우 2년, 집행유예의 경우 3년임

(2) 군인등유사강간

(가) 전체 - 9건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48	60		
군인등 유사강간	수	-	-	-	-	-	2	3	-	4	-	-	9	28.00
	비율	-	-	-	-	-	22.2	33.3	-	44.4	-	-	100.0	

(나) 실행 - 3건(전체 건수 대비 33.3%)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12	18	24	36	48	60		
군인등 유사강간	수	-	-	-	2	-	1	-	-	3	24.00
	비율	-	-	-	66.7	-	33.3	-	-	100.0	

(다) 집행유예 - 6건(전체 건수 대비 66.7%)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군인등 유사강간	수	-	-	-	-	-	-	3	-	3	6	30.00
	비율	-	-	-	-	-	-	50.0	-	50.0	100.0	

(라) 형량분포 분석

- 전체 평균형량은 징역 2년 4월로서, 3년이 4건, 2년이 3건, 1년 6월이 2건임
- 법정형 하한인 3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는 없음

(3) 군인등강간

(가) 전체 - 2건(모두 실행)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48			60
군인등강간	수	-	-	-	-	-	-	-	-	-	1	1	2	54.00
	비율	-	-	-	-	-	-	-	-	-	50.0	50.0	100.0	

(나) 형량분포 분석

- 전체 평균형량은 4년 6월(4년 1건, 5년 1건)

- 법정형의 하한인 5년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는 없음

나.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

(1) 소유형 1 ‘군인등 강제추행’

(가)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 : 징역 2년 6월
- 감경 영역의 하한 : 징역 6월
- 가중 영역 : 징역 2년~4년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의 하한
 - ㉞ 다수 의견(9인) : 10월
 - ㉟ 소수 의견(1인) : 1년
- 감경 영역의 상한
 - ㉞ 다수 의견(9인) : 1년
 - ㉟ 소수 의견(1인) : 1년 6월

(나) 상세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 감경 영역의 하한, 가중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의 상한은 징역 2년 6월, 감경 영역의 하한은 징역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4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① 기본 영역의 하한

㉓ 다수 의견(9인) : 징역 10월

- 양형자료조사 결과 평균 형량이 10.99월이므로, 이를 포섭하는 징역 10월을 기본 영역의 하한으로 함이 적절함

㉔ 소수 의견(1인)²⁵⁾ : 징역 1년

- 법정형의 하한을 기본 영역으로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② 감경 영역의 상한

㉓ 다수 의견(9인) : 징역 1년

- 감경 영역의 상한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3.3%가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함

㉔ 소수 의견(1인)²⁶⁾ : 징역 1년 6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상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을 참작

(다) 다수 의견에 따른 형량범위안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²⁷⁾	10월 ²⁸⁾ - 2년6월	2년 - 4년

(2) 소유형 2 '군인등 유사강간' 의견 일치

- 감경 영역 및 기본 영역은 법정형이 같은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형량범위 설정 ⇨ 감경 영역 : 1년 6월~3년 / 기본 영역 : 2년 6월 ~ 5년
- 가중영역 하한은 법정형이 같은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하

25) 불참한 정초아 전문위원을 포함하면 2인

26) 불참한 정초아 전문위원을 포함하면 2인

27) 1년 6월(1인) 있음

28) 1년(1인) 있음

계 4년으로 설정하되, 상한은 그중 일반강간과 동일한 7년으로 설정함이 적절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가중영역 상한이 7년(일반강간, 특수강제추행)과 6년(장애인의제간음)으로 다름. 군인등유사강간과 일반강간, 특수강제추행은 유형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행위 태양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중한 사례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중 영역 상한을 7년으로 설정

○ 형량범위안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소유형 3 ‘군인등 강간’

(가)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가중 영역 : 징역 6년~9년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감경 영역

㉠ 다수 의견(8인) : 기본 영역은 4~7년, 감경 영역은 2년6월~5년

㉡ 소수 의견(2인) : 기본 영역은 5~8년, 감경 영역은 3년~5년 6월

(나) 상세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가중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가중 영역은 징역 6년~9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과 감경 영역

① 다수 의견(8인)²⁹⁾ : 기본 영역은 4~7년, 감경 영역은 2년6월~5년

- 일반강간의 가중 영역이 4년~7년이고, 기본 영역이 2년 6월~5년임. 일반강간죄에 대한 특별가중요건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강간죄 가중 영역을 기본 영역으로, 기본 영역을 감경 영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② 소수 의견(2인) : 기본 영역은 5~8년, 감경 영역은 3년~5년 6월

-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 정도가 유사하고 소유형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유사강간(제1유사범죄)과 위계등간음(제2유사범죄)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

(다) 형량범위안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³⁰⁾	4년 - 7년 ³¹⁾	6년 - 9년

5. 대유형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중유형 다. ‘균형법상 성범죄’ 형량범위 검토

가. 양형자료조사결과³²⁾

(1) 군인등 강제추행치상

(가) 전체 - 1건(실형)

29) 불참한 정초아 전문위원을 포함하면 9인

30) 3년~5년 6월(2인) 있음

31) 5~8년(2인) 있음

3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실시한 양형자료조사(2019. 7. 8. ~ 2019. 7. 26.)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제1심 사건에 대한 것임(전역자 등에 대한 일반 법원 선고 사건은 불포함). 이하 같음.

단위: 명, %, 월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6	8	9	10	12	18	24	30	36	48	60		
군인등 강제추행 치상	수	-	-	-	-	-	-	-	-	1	-	-	1	36.00
	비율	-	-	-	-	-	-	-	-	-100.0	-	-	100.0	

- 선고 사례가 1건에 불과함. 해당 사건은 법률상감경 및 작량감경이 적용되었음(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형량범위에 관한 검토 결과 ☞ 의견 불일치

(1) 다수 의견(6인)³³⁾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양형기준 참조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 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가) 소수 의견(4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강제추행등상해/치상] 양형기준 참고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33) 불참한 정초아 전문위원을 포함하면 7인.

6. 소결론 - 형량범위(안)

01 | 일반적 기준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³⁴⁾	10월 ³⁵⁾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³⁶⁾	4년 - 7년 ³⁷⁾	6년 - 9년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제1안(다수 의견, 6인)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 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제2안(소수 의견, 4인)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34) 1년6월(1인) 있음

35) 1년(1인) 있음

36) 3년~5년 6월(2인) 있음

37) 5~8년(2인) 있음

V.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형량범위)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의결 내용

가. 설정 범위

- 현행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추가하지 않음

나. 유형분류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2	위험운전 치사			

2. 유형분류에 따른 구성요건과 법정형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제5조의11 전문	10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법정형 변경
위험운전치사	특가법 제5조의11 후문	1년 이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법정형 변경
치상 후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치상 후 유기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치사 후 유기도주 또는 도주 후 유기치사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형량 분포³⁸⁾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전체

단위: 명, %

유형	영역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제1 유형	감경	수	1	6	34	569	69	1,502	8	793	4	120	61	3	1	-	8
		비율	0.0	0.2	1.1	17.9	2.2	47.2	0.3	24.9	0.1	3.8	1.9	0.1	0.0	-	0.3
	기본	수	-	1	8	632	113	4,032	38	2,847	39	1,371	1,046	28	3	10	62
		비율	-	0.0	0.1	6.2	1.1	39.4	0.4	27.8	0.4	13.4	10.2	0.3	0.0	0.1	0.6
	가중	수	-	-	1	36	10	497	6	1,687	24	920	811	57	3	21	141
		비율	-	-	0.0	0.8	0.2	11.7	0.1	39.7	0.6	21.6	19.1	1.3	0.1	0.5	3.3
	소계	수	1	7	43	1,237	192	6,031	52	5,327	67	2,411	1,918	88	7	31	211
		비율	0.0	0.0	0.2	7.0	1.1	34.1	0.3	30.1	0.4	13.6	10.9	0.5	0.0	0.2	1.2
제2 유형	감경	수	-	-	4	227	33	1,144	11	948	27	756	544	17	2	6	48
		비율	-	-	0.1	6.0	0.9	30.2	0.3	25.0	0.7	20.0	14.4	0.4	0.1	0.2	1.3
	기본	수	-	-	-	3	-	30	1	129	5	167	271	28	-	9	140
		비율	-	-	-	0.4	-	3.6	0.1	15.3	0.6	19.8	32.1	3.3	-	1.1	16.6
	가중	수	-	-	-	-	-	1	-	1	-	3	25	5	-	3	29
		비율	-	-	-	-	-	0.7	-	0.7	-	2.2	18.5	3.7	-	2.2	21.5
	소계	수	-	-	4	230	33	1,175	12	1,078	32	926	840	50	2	18	217
		비율	-	-	0.1	4.8	0.7	24.7	0.3	22.6	0.7	19.4	17.6	1.0	0.0	0.4	4.6
전체	수	1	7	47	1,467	225	7,206	64	6,405	99	3,337	2,758	138	9	49	428	
	비율	0.0	0.0	0.2	6.5	1.0	32.1	0.3	28.5	0.4	14.9	12.3	0.6	0.0	0.2	1.9	

유형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0	22	24	26	30	36	42	48	54	60	72	84		
제1 유형	감경	수	-	-	-	-	-	-	-	-	-	-	-	-	3,179	6.39
		비율	-	-	-	-	-	-	-	-	-	-	-	-	100.0	
	기본	수	-	-	11	-	-	1	-	-	-	-	-	-	10,242	7.71
		비율	-	-	0.1	-	-	0.0	-	-	-	-	-	-	100.0	

38) 2016년~2018년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사건을 대상으로 함

유형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0	22	24	26	30	36	42	48	54	60	72	84		
	가중	수	1	-	30	-	3	3	1	-	-	-	-	-	4,252	9.54
		비율	0.0	-	0.7	-	0.1	0.1	0.0	-	-	-	-	-	100.0	
	소계	수	1	-	41	-	3	4	1	-	-	-	-	-	17,673	7.91
		비율	0.0	-	0.2	-	0.0	0.0	0.0	-	-	-	-	-	100.0	
제2 유형	감경	수	1	1	15	-	-	1	-	-	-	-	-	-	3,785	8.35
		비율	0.0	0.0	0.4	-	-	0.0	-	-	-	-	-	-	100.0	
	기본	수	1	-	48	-	6	3	3	1	-	-	-	-	845	12.89
		비율	0.1	-	5.7	-	0.7	0.4	0.4	0.1	-	-	-	-	100.0	
	가중	수	-	2	25	1	9	12	4	5	3	4	2	1	135	25.14
		비율	-	1.5	18.5	0.7	6.7	8.9	3.0	3.7	2.2	3.0	1.5	0.7	100.0	
	소계	수	2	3	88	1	15	16	7	6	3	4	2	1	4,765	9.63
		비율	0.0	0.1	1.8	0.0	0.3	0.3	0.1	0.1	0.1	0.1	0.0	0.0	100.0	
전체	수	3	3	129	1	18	20	8	6	3	4	2	1	22,438	8.28	
	비율	0.0	0.0	0.6	0.0	0.1	0.1	0.0	0.0	0.0	0.0	0.0	0.0	100.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단위: 명, %

기간 ³⁹⁾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28	30	34	36	41			60	72	96
18.12.18 ~19.06.17	수	5	3	276	3	405	5	273	381	25	1	10	55	1	9	0	1	1	1	1	0	2	0	1,458	9.83
	비율	0.3	0.2	18.9	0.2	27.8	0.3	18.7	26.1	1.7	0.1	0.7	3.8	0.1	0.6	0.0	0.1	0.1	0.1	0.1	0.0	0.1	0.0	100.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

단위: 명, %

기간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2	14	16	18	22	24	30	36	42	54	60	72	84			
18.12.18. ~19.06.17	수	1	-	1	6	1	6	1	2	1	1	-	1	1	22	29.82	
	비율	4.5	-	4.5	27.3	4.5	27.3	4.5	9.1	4.5	4.5	-	4.5	4.5	100.0		

39) 운영지원단에서 별도로 제공받은 통계임. 기간은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써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개정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2018. 12. 18. 이후의 선고 사건이 반드시 개정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다만 개정법의 취지가 구법을 적용한 판결의 형량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 참고자료로 삼음. (3)항의 통계자료도 동일함

4. 대유형의 명칭과 순서

- 현재 양형기준의 유형 명칭에 맞추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유형 명칭을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기존 대유형1에서 독립된 대유형으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순서를 대유형1인 일반 교통사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함
 - 다만 기존 대유형과의 경합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순서를 3번째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5. 소유형 1 '위험운전치상'의 형량범위 검토

가. 요약

-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징역 6월~1년6월
-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
 - ㉠ 다수 의견(7인) : 징역 8월~2년6월
 - ㉡ 소수 의견(3인) : 징역 1년~3년
 - 가중 영역
 - ㉠ 다수 의견(6인) : 1년6월~4년
 - ㉡ 제1 소수 의견(2인) : 1년~3년6월
 - ㉢ 제2 소수 의견(2인) : 2년~5년

나. 상세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감경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기존 양형기준

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감경 영역은 징역 6월~1년6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 대유형1 일반 교통사고의 감경 영역(징역 8월 이하) 보다 높게 설정함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가) 기본 영역

① 다수 의견(7인) : 징역 8월~2년6월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 2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개정된 점, 치사와는 달리 치상의 경우 상해의 부위, 정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상한은 징역 2년 6월이 적절함
- 기본 영역의 하한이 8월을 초과할 경우 양형실무의 47.8%가 기본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는 문제 발생함
-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작량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사건이 존재하므로 법정형 하한을 기본 영역의 하한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소수 의견(3인) : 징역 1년~3년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 사정을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의 하한을 기본 영역으로 하한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본 영역 하한이 반드시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아야 한다는 법칙은 없음(예를 들어 체포, 감금, 치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기본 영역이 1년에서 2년으로 정해져 있음)
- 가중 영역의 상한을 넓게 잡은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한은 3년이 바람직함

(나) 가중 영역

① 다수 의견(6인) : 징역 1년 6월~4년

-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와 법정형의 하한이 동일한 일반물건 방화, 중상해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고
- 하한을 징역 1년으로 하면 감경 영역의 상한(1년 6월)보다 가중 영역의 하한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

② 제1 소수 의견(2인) : 징역 1년~3년 6월

- 가중영역 하한을 1년 6월로 정하면 기본영역 하한과 차이가 크고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하한 이탈 발생 가능성 높음
- 가중영역 상한을 4년으로 설정하면 양형기준의 폭이 3년으로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3년 6월이 적정

③ 제2 소수 의견(2인) : 징역 2년~5년

- 법정형의 징역형 범위가 동일한 특수공갈죄 양형기준을 참조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고,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⁴⁰⁾	1년6월 - 4년 ⁴¹⁾

40) 1년-3년(3인) 있음

41) 1년-3년6월(2인), 2년-5년(2인) 있음

6. 소유형 2 '위험운전치사'의 형량범위 검토

가. 요약

-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 상한 : 징역 5년
 - 가중 영역 : 징역 4년~8년
-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기본 영역의 하한
 - ㉠ 다수 의견(7인) : 2년
 - ㉡ 소수 의견(3인) : 3년
 - 감경 영역
 - ㉠ 다수 의견(7인) : 1년6월~3년
 - ㉡ 소수 의견(3인) : 2년~3년 6월

나. 상세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 영역의 상한과 가중 영역
 - 선고형량의 분포,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기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기본 영역 상한은 징역 5년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4년~8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가) 기본 영역의 하한

- ① 다수 의견(7인) : 징역 2년
 - 작량감경 시 처단형의 하한이 1년 6월인 점을 고려하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하한을 법정형 하한과 동일한 징역 3년으로 설정할 경우 73%의

사건이 기본 영역의 하한을 이탈하는 문제 발생

② 소수 의견(3인) : 징역 3년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 점을 반영
- 법정형의 하한을 기본 영역으로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나) 감경 영역

① 다수 의견(7인) : 징역 1년 6월~3년

-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하한인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적절하고, 상한은 유기징역형의 범위가 동일한 대다수 범죄와 같이 3년으로 정함

② 소수 의견(3인) : 징역 2년~3년 6월

-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

(3)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 - 3년 ⁴²⁾	2년 ⁴³⁾ - 5년	4년 - 8년

7. 소결론 - 형량범위(안)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 6월	8월 - 2년 6월 ⁴⁴⁾	1년 6월 - 4년 ⁴⁵⁾
2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 - 3년 ⁴⁶⁾	2년 ⁴⁷⁾ - 5년	4년 - 8년

42) 2년-3년 6월(3인) 있음

43) 3년(3인) 있음

44) 1년-3년(3인)있음

45) 1년-3년 6월(2인) 및 2년-5년(2인) 있음

46) 2년-3년 6월(3인) 있음

47) 3년(3인) 있음

VI. 향후 일정

1. 전문위원 전체 회의

- 안건 : 「교통범죄」 등 3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설정/수정방안
 - 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 사유 검토
- 일시 : 2019. 11. 11.(월) 15:30~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 안건 : 양형기준 해설 제2차 수정 초고 검토
- 일시 : 2019. 11. 18.(월) 16:00~